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89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892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2 선고 2018가단2394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A(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유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백종현, 황기현

변론종결 2022. 11. 16.

판결선고 2023. 1. 1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2. 선고 2018가단23949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3째 줄부터 4째 줄까지의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항소심에서 망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망인이 2008. 7.경부터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 증상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심각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인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M 및 K 집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1/4 지분으로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소유권(원고들 각 1/4)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53109(반소)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제1증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2008. 7.경 처음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관련 질병으로 반복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3. 5. 2. 피고로부터 존속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데, 다른 자녀들을 제외하고 차남인 피고에게만 주요 재산을 증여하였던 점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반면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증여가 있었던 시점인 2014. 7. 23.경에는 망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형사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망인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 역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피고가 그나마 자신이 화를 내도 잘 받아준다는 이유로 차남인 피고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성년후견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음), ③ 망인은 이 사건 제1 증여가 이루어지기 약 9개월 전인 2013. 10. 17. 이 사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한 면이 있으나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갑 제1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증여 당시인 2014. 7. 23.경 망인에게 의사결정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증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15. 5.경 뇌출혈이 재발하여 입원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 ② 망인은 2015. 6. 19. H병원에서 시행한 전반적 퇴화 척도 평가(Global Deterioration Scale)부터 중등도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고, I병원에서의 치매평가(MMSE-K)에서는 2015. 7. 9. 총점 19점으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2015. 8. 7. 총점 16점으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2015. 9. 7. 총점 19점으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2015. 10. 7. 20점으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의 각 판정을 받은 점, ③ 2016. 4. 6. 발행된 J병원 의사 N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이 2016. 2. 19.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J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인지기능 저하로 간단한 의사소통 이외 인지기능 저하 관찰된다는 소견 내용인 점, ④ 2016. 4. 4. 발행된 J병원 의사 N 작성의 진단서(진단서상 추정적 발병, 수상일은 2015. 5. 13.로, 진단일은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면 망인은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으로 진단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을 제3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O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O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내용은, 망인에 대한 H병원에서의 2015. 5. 2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시행한 K-MMSE, K-CDR, GDS, LOTCA 등 평가 결과상으로는, 망인의 인지기능 상태는 경도의 치매 단계로 판단되고, I병원에서의 2015. 7. 9.부터 2015. 10. 7.까지 시행한 MMSE-K 평가 결과상으로는, I병원에서의 입원 기간 동안 망인의 H병원에서의 상태와 인지 기능 정도는 비슷하고 경도 치매 단계로 판단되며, 이 사건 제2 증여 당시에도 망인은 기억력 장애는 있으나 오래된 기억이나 일상의 대화 및 활동은 가능한 초기 치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증여와 관련된 사무능력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MMSE 10-26, CDR 1-2의 경우에는 사무능력이 간헐적으로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런 경우 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망인의 경우 2015. 11. 2.경 MMSE 19-20, CDR 1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무능력이 간헐적으로 결여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제2 증여의 시점에 망인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증여 당시 사무능력의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인바, 앞서 본 망인의 질환과 치매 관련 평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증여 당시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부족한 점(I재활병원과 H재활병원이 망인을 직접 임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MMSE 점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신체 상태에 따라 호전,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언어기능 및 이해판단능력 수치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법원의 O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를 배제하고 망인을 임상한 병원의 평가만으로 이 사건 제2 증여 당시 망인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② 망인의 2015. 12. 15.경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질문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망인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의 망인의 답변 태도만으로 이 사건 제2 증여의 시점에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과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증여 당시인 2015. 11. 2.경 망인에게 의사결정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안좌진, 판사 이혜미

별지

부 부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로명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23.70㎡

28 132.74m²

3-8 132.74m²

4.8 132.74m²

지층 123.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7.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241.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2413분의 23.09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75.7㎡

3. 위 2. 지상 벽돌조 및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2층주택

1층 57.86㎡

2층 57.86㎡

지층 57.86㎡

내역 : 지층 57.86㎡(대피소 및 보일러실)

1층 : 57.86㎡(근린생활시설)

2층 : 57.86㎡(주택). 끝.

